# 심 사 보 고 서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9

2024. 1. 25.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 16. / 박경원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4. 1. 1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25.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기존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교체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일러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보일러실을 추가하여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 규정함. (안 제20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공선)

-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에서 난방시설의 교체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의 면적으로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 가설건축물을 추가 지정하여 적법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보일러실에 대한 필요한 최소의 면적과 그 기준에 대한 심도

##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답변 요지
  - O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 O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O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359

2024. 1. 25. 도시교통위원회

#### 1. 수정이유

본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 중 보일러실 등의 연면적에 관한 사항과 문구 정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제20조 제2항 제13호의 내용 중
  - "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을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로서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기존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
    - 나.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일 것
    - 다. 보일러 면적이 보일러실 면적의 2/3이상일 것
    - 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할 것" 이라고 정비
- O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함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 제2항 제13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중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로서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기존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
  - 나.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일 것
  - 다. 보일러 면적이 보일러실 면적의 2/3이상일 것
  - 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할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1. ~ 12.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1. ~ 12.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본 호 신설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한한 다)에 설치하는 준불 연재료 이상으로 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의 보 일러실(기존 보일러를 환경 표지 인증 또는 신·재생에 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중 단독 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실(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로서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기존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이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을 이격해야한다.)	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준불연재 이상의 재료일 것 다. 보일러 면적이 보일러실 면적의 2/3이상일 것 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할 것